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5일(목) 입법예고했다.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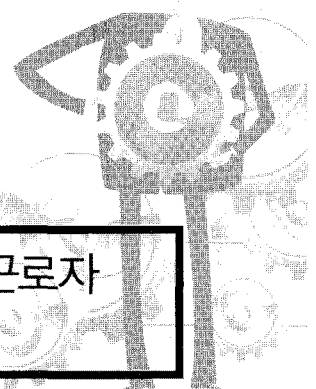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의 이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화재, 폭발·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로 화학물질의 ‘취급설명서’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기초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방법, 교육기관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마련했다.

한편, 프레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기구를 유해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류·조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 간소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을 면제하는 등 사업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백혈병 물의 빛은 삼성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잡소리

- 삼성반도체에 실천방안 마련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밝혀

고용부는 삼성전자(반도체)가 올해 7월 14일 밝힌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에 대해 세부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추가하여, 삼성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유해성) 파악,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및 전담 산업의학전문의(專門醫) 확보 등을 주문하였다.

고용부의 요구사항은,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개선계획의 효과를 높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과 근로자와의 유해성 정보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① 유해물질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는 건강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 ② 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③ 퇴직 임직원 암발병자 지원 등 삼성전자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① 취급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여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관리하는 제도* 운영, ② 일부 공정에 국한되어 있는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 공정으로 확대, ③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유해성 주지(周知) 활성화, ④ 산업보건업무를 전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산업의학전문의의 사업장별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 대상물질 등 법적 관리물질 외에 비(非)법적 관리물질에 대해서까지 유해성(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여 구분관리

아울러,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힌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삼성전자 측에 강력 주문하였다.

※ 고용부에서 볼 때, 삼성전자 자체계획과 고용부 추가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2012년까지 약 110억, 2020년까지 약 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 제외), 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산업보건 주요뉴스

한편,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남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아닌 유해성이 강한 물질(벤젠, 톨루엔 등 788종)을 영업비밀로 처리하는 사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화학물질 성분, 함유량도 무작정 영업비밀로 하는 사례 ☹️